

재무감사

분류번호

2018-재무-009

# 감사 보고서

- 통일부 등 7개 기관 재무감사 -

2018. 4.

감사원

# 목 차

I. 감사실시 개요.....	1
II. 감사대상기관(업무) 현황 및 실태.....	2
III. 감사결과.....	4
1. 감사결과 총괄.....	4
2. 처분요구와 통보사항.....	4
<위임처리 사항>	
(1) 승소 확정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 부적정(통보).....	5
(2) 2017회계연도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측정 부적정(주의).....	9
(3) 2017회계연도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부적정(주의).....	16
(4) 2017회계연도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부적정(주의).....	19
IV. 현지조치사항 명세.....	24

# I. 감사실시 개요

## 1. 감사배경 및 목적

감사원은 「국가재정법」 제6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에 통일부 등 7개 기관의 회계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2018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.

## 2. 감사중점 및 대상

이번 감사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예산·결산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통일부, 외교부, 원자력안전위원회, 국무조정실, 국무총리비서실, 법제처,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.

## 3. 감사실시 과정

이번 감사는 2018. 3. 5.부터 같은 해 3. 21.까지(13일간) 감사인원 23명(회계사 8명 포함)을 투입하여 통일부 등 7개 기관이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집행한 세입·세출 결산과 성과계획서·보고서 및 국가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였다.

## 4. 감사결과 처리

감사결과 위법·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18. 3. 21. 기관별로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, 업무처리 경위·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. 이후 감사원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8. 4. 11.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.

## II. 감사대상기관(업무) 현황 및 실태

### 1. 주요 임무와 역할

기관명	임무 및 역할
통일부	▪ 통일정책 수립,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 등
외교부	▪ 외교정책 수립·시행, 재외동포 정책수립 및 재외국민 보호 등
원자력안전위원회	▪ 원자력 안전성 확보, 방사선 비상 및 재난대비 체제 강화 등
국무조정실	▪ 정책의 조정, 사회위험 갈등의 관리, 정부업무평가, 규제개혁 등
국무총리비서실	▪ 당정협조업무, 국내외 주요 정보 및 상황 등에 관한 국무총리 직무 보좌
법제처	▪ 정부입법 총괄·조정, 법령해석 및 정비에 대한 사무 관장 등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	▪ 대통령의 통일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·건의 등

자료: 통일부 등 7개 기관 제출자료 재구성

### 2. 조직 및 정원 (2017년 12월 말 기준)

구분	조직	정원
통일부	▪ 본부(2실, 3국, 1단), 남북회담본부 등 8개 소속기관	본부(245명), 소속(317명)
외교부	▪ 본부(1실, 4대사, 14국, 18관), 국립외교원, 재외공관(163개)	본부(876명), 소속(1,377명)
원자력안전위원회	▪ 본부(2국, 1관), 지역사무소(4개)	본부(117명), 소속(33명)
국무조정실	▪ 본부(5실, 20관, 9단), 조세심판원 등 3개 소속기관	본부(250명), 소속(155명)
국무총리비서실	▪ 3실, 8비서관	94명
법제처	▪ 1실 6국	199명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	▪ 1관 2국	74명

주: 국무총리비서실, 법제처,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3개 기관은 소속기관 없음

자료: 통일부 등 7개 기관 제출자료 재구성

### 3. 감사대상기관 회계 현황

(단위: 개, 억 원)

기관명(회계 수)	회계명	2016년 예산현액	2017년 예산현액
통일부(2)	일반회계	4,623	4,708
	남북협력기금	16,141	19,732
	소계	20,764	24,440
외교부(3)	일반회계	21,718	22,560
	국제 교류기금	1,096	1,085
	국제질병퇴치기금	0	831
	소계	22,814	24,476
원자력안전위원회(1)	일반회계	910	945
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(3)	일반회계	5,255	5,223
	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	146	146
	환경개선특별회계	13	0
	소계	5,414	5,369
법제처(1)	일반회계	313	327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(1)	일반회계	267	273
합계		50,482	55,830

자료: 통일부 등 7개 기관 제출자료 재구성

# 감 사 원

## 주 의 요 구

제 목 2017회계연도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부적정  
소 관 기 관 국무조정실  
조 치 기 관 국무조정실  
내 용

### 1. 업무 개요

국무조정실은 「국가재정법」 제8조 및 「국가회계법」 제14조 등에 따라 2017회계연도의 “성과계획서”와 “성과보고서”를 작성하였다.

국무조정실은 “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·감독, 정책조정 및 사회위험·갈등 관리,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, 제 정당 및 국민과의 소통에 관해 국무총리를 충실히 보좌하여 국정운영의 성과를 제고한다”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“성과계획서” 및 “성과보고서”에 “임무-비전-전략목표(2개)-프로그램목표(2개)-단위사업(29개)”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, 프로그램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5개의 성과지표(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5개, 단위사업 성과지표 70개)를 설정하고,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.

그리고 국무조정실은 단위사업[Ⅱ-2-일반재정(3)] 규제개혁의 성과지표로 “③ 부처의 개선권고 수용률(%)”을 선정하고 2017년도 목표치를 33%로 설정하였다.

(전략목표) II. 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

(성과목표) II-2.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역량 제고

(단위사업) II-2-일반재정(3) 규제개혁

(성과지표) ③ 부처의 개선권고 수용률(%)

## 2.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

「2017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」 II-2-(2)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하고,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과거 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다.

한편 위 성과지표의 과거 목표치와 실적치를 살펴보면 [표]와 같이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개년간 평균 실적치는 34.9%를 기록하였고, 2016년도 실적치는 36.8%를 기록함에 따라 2016년도의 성과 달성률은 112%로 보고되었다.

[표] 성과지표 설정 내역

(단위: %)

성과지표	측정방법	목표 대비 달성률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
③ 부처의 개선권고 수용률(%)	개선조치 해당 과제 중 부처가 개선을 수용한 과제 수	목표(A)	43	35	33	33
		실적(B)	37.6	30.2	36.8	35.9
		달성률 (B/A)	87	86	112	109

주: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재구성

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위 성과지표의 2017년도 목표치를 설정할 때에는 과거 추세치 및 전년도 실적치를 고려하여 전년도보다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, 전년도의 성과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100%를

초과한 112%를 달성한 점을 고려할 때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국무조정실은 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하면서 위 성과지표의 과거 추세치 (직전 3개년간 평균 실적치 34.9%, 2016년도 실적치 36.8%)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인 33%로 전년도 목표치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.

위와 같이 위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보수적으로 설정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위 성과목표에 대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어렵게 되었다.

**관계기관 의견** 국무조정실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부처의 개선권고 수용률이 과거보다 낮아지는 추세로 2017년도 목표치를 최근 2개년도 실적의 평균인 32.6%보다 상회하는 33%로 설정하였으나 앞으로 보다 더 도전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노력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

**조치할 사항**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할 때에는 과거 실적치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.(주의)